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4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포상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포상대상 범위 규정(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4. 16.)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4. 4.
- 회부일자 : 2024. 4. 16.
- 상정일자 : 2024. 4. 16.

2. 제안이유

- 포상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대상 범위 규정(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¹⁾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포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포상대상)에서 포상 대상을 각 호로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함.

현 행	개 정
<p>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p>	<p>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u> 2. <u>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3. <u>읍·면 단위 이상의 기관·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회원</u> 4. <u>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단체</u>

1) 불임 관계법령 참고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유공자를 두루 포창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포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가.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붙임 2]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
----------	-----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제2조(포상대상)에 따른 포상대상 중, '단체'가 의미하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에 대한 포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포상대상)의 각 호를 신설하여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1. ~ 2024.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
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면 단위 이상의 기관·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회원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단체 및 거주자

제8조제2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u>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u> <u>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3. 읍·면 단위 이상의 기관·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회원</u> <u>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단체 및 거주자</u>
<p>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략)</p> <p>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그 외 -----</p> <p>--.</p> <p>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 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
연락처	(033) 330 - 2210